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법률명 변경 등 법령정비(안 제5조, 제6조)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나. 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공공시설로 유형화하여 정함

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방법(안 제36조의2)

성실한 가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 처분시 수익계약으로 취득할 경우 매매계약 방법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7.31. ~ 2020.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관서의 중”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관서의 중”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인수할 중앙관서의 중”을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제활동기반시설

가. 주거지주차장, 전통시장주차장

나. 클린사업장

다. 수소충전소

라. 유해물질대응정수처리시설

마.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 재활용분리선별장

아. 농산물직매장

자. 그 밖에 가 내지 아에 준하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다만,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인 시설로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을 관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회서비스제공시설

가. 감염병 전문병원

나. 공립요양병원

다. 치매전담노인 요양시설

라. 재활병원

마. 노숙인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 근로자건강센터, 주민건강센터

사.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가족센터

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차.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공간

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타. e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 내지 타에 준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일반공중이용공공용시설

가. 체육진흥시설

나. 국민체육센터

다. 복합커뮤니센터

라. 지역복합복지시설

마. 산재예방시설

바. 그 밖에 가 내지 마에 준하는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물납증권의 수의계약 방법 등)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매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매수예약을 신청한 물납자는 제36조의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제3항제28호 가목 및 다목의 조건은 해당 지분증권 처분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주식가치가 훼손된 경우 매수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제1호의4를 신설한다.

국유재산

[]

[]

[]

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수익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재산(증권)의 표시					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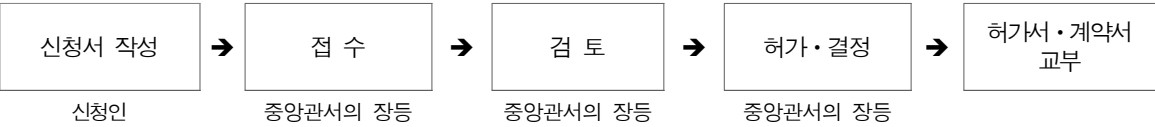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 출 서 류

- ※ 국유재산(증권) 매수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
 - 개인의 대리인 :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의 대리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 부족시 뒷면에 기재(매수예약에 의한 매수신청의 경우 해당없음)
- ※ 매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매수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 신청일부터 매수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매수 신청일 현재까지의 주주현황 각 1부

유 의 사 항

국유재산(증권)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나. 법인현황 (해당되는 곳에 √ 표 기재)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중소(중견)기업 여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업종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과의 관계		대표이사간	

라. 신청 내용		
재산(증권)의 표시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2. 피상속인 제적등본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4.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7.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은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매각 예정가격이 수납가액 보다 적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 가목 및 다목의 조건은 지분증권 처분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주식가격이 훼손된 경우 매수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등기·등록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등록 등) 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제6조(관리전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u>중앙관서의 중</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현재의 <u>중앙관서의 중</u> 및 인	제6조(관리전환) ① ----- ----- --- <u>중앙관서의 장</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u>중앙관서의 장</u> 및 인수

수할 중앙관서의 중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 6. (생략)

<신 설>

할 중앙관서의 장-----

3.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경제활동기반시설

가. 주거지주차장, 전통시장주
차장

나. 클린사업장

다. 수소충전소

라. 유해물질대응정수처리시설

마.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 재활용분리선별장

아. 농산물직매장

자. 그 밖에 가 내지 아에 준하
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
는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
는 시설(다만, 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인 시설
로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회서비스제공시설

가. 감염병 전문병원

나. 공립요양병원

다. 치매전담노인 요양시설

라. 재활병원

마. 노숙인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 근로자건강센터, 주민건강센터

사.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가족센터

아.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차.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공간

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타. e스포츠 상설경기장

파. 그 밖에 가 내지 타에 준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일반공중이용공공용시설

<신 설>

가. 체육진흥시설
나. 국민체육센터
다. 복합커뮤니센터
라. 지역복합복지시설
마. 산재예방시설
바. 그 밖에 가 내지 마에 준하는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36조의2(물납증권의 수의계약 방법 등) 영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매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매수예약을 신청한 물납자는 제36조의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영 제40조제3항제28호 가목 및 다목의 조건은 해당 지분증권 처분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주식가치가 훼손된 경우 매수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 **[] 사용허가**
[] 대부 **신청서**
[] 매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수익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재산(증권)의 표시					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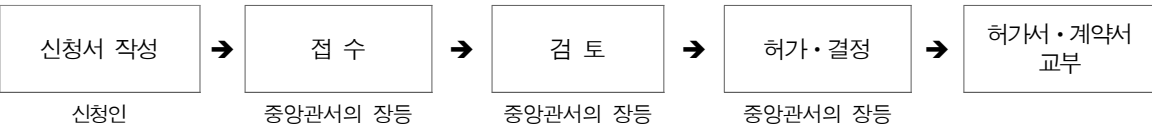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 출 서 류

- ※ 국유재산(증권) 매수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및 법인인감도장
 - 개인의 대리인 :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의 대리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 부족시 뒷면에 기재(매수예약에 의한 매수신청의 경우 해당없음)
- ※ 매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매수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 신청일부터 매수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매수 신청일 현재까지의 주주현황 각 1부

유 의 사 항

국유재산(증권)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나. 법인현황 (해당되는 곳에 √ 표 기재)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중소(중견)기업 여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업종	

다.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과의 관계		대표이사간	

라. 신청 내용

재산(증권)의 표시			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2. 피상속인 제적등본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4.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7.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매각 예정가격이 수납가액 보다 적은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 가목 및 다목의 조건은 지분증권 처분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주식가격이 훼손된 경우 매수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65